



원종욱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의 교수

산재보험이 사업주에 불리할까?

사업주 무과실 책임 이전의 방어 논리

산재보상이 ‘배상’이 아닌 이유는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과 관련 있다. 배상은 타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사업주 무과실 책임은 사업주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이라 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도입 이전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시해에 의존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사업주의 위법 행위 및 태만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산재노동자는 사업주에 비해 사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고, 재해를 증언할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업주의 방어 논리가 법정에서 수용되었다.

첫째, 근로계약을 할 때 노동자가 이미 사업장의 위험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즉, 근로계약 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위험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이다. 둘째, 노동자가 잘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일부만 책임이 있다는 논리이다. 셋째, 동료 노동자의 잘못으로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상 책임은 잘못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원칙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사업주 또는 기업이 잘못된 것이 없어도 산재보험에서 산



재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 과실이 없는 사업주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주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산재보상이 사업주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우선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부담 없이 산재보험에서 산재노동자에게 모든 보상을 해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산재 원인의 여부를 노동자와 다룰 필요도 없다. 사실, 사업주는 산재 신청서만 작성하고 나면 그 이후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

보상금 측면에서도 산재보험이 더 유리하다. 사업주가 보상금 일부를 부담할 필요도 없으며, 보통 민사 소송에서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위자료를 산재보험에서는 부담하지도 않는다. 물론 경우에 따라 산재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지는 않다.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산재보험과 별도로 위로금을 주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연방 고용주 책임법으로 본 산재보상

미국 철도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연방 고용주 책임법(Federal Employers' Liability Act; FELA)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는다. 미국은 주별로 법이 조금씩 다른데, 철도 산업 특성상 여러 개의 주를 통과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FELA는 1908년 철도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FELA는 노동자가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며, 만일 산재 발생에 노동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보상을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산재 발생에 대해 사업주 과실이

60%이고, 노동자 과실이 40%라면 노동자는 60%밖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산재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FELA이 산재보험법과 다른 점은 보상에도 있다. 대부분 주의 산재보험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2/3를 보상하는 데 반해 FELA는 과거 및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임금 손실의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뿐 아니라 과거 및 미래의 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보다 소송을 통한 FELA의 보상이 더 많은 경우가 빈번하다.

FELA와 산재보험 어느 것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고, 어느 것이 사업주에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상반된 논란은 수없이 있었다. 산재보험 도입 초기 철도 노동자들이 FELA를 산재보험으로 전환을 원했지만, 나중에는 사업주들이 FELA를 산재보험으로 전환하기를 원했다. FELA가 도입된 이후 44년 동안 FELA를 산재보험으로 대체하려는 법안이 26번이나 발의되었지만,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FELA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고 산재사고에 대한 과실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에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상금이 산재보험보다 크고, 사업주의 주의 의무가 과거보다 커져 사업주의 패소 확률이 더 높다.

산재보상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우리나라는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후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 손해배상 소송은 과실을 바탕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소송에서 산재노동자가 승소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만큼을 공제하고 배상받



게 된다. 이렇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주가 배상하는 것은 사업주의 산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산재보험을 통해서 배상 책임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산재보험 보상 이후에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로는 영국, 일본 등이 있다.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보상을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 한편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철도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재보험이 늦게 도입된 나라일수록 산재보험의 배타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상 후 민사 소송에 대한 사업주 면책

사업주가 산재와 관련된 과실이 있어도 소송을 피하는 방법은 산재노동자 또는 유족이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장해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노동자가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¹⁾ 장해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산재노동자 또는 유족과 사업주가 합의하여 청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재해자나 유족이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특별급여는 재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도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방법은 산재노동자의 유족이 선택해야 하므로 사업주로서는 피동적이기는 하지만 소송을 피하는 방법이 된다. 다만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장해특별급여는 1건, 유족특별급여는 8건이 지급되었다. 즉,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산재노동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1) 산재보험법 [법률 제17434호, 2020. 6. 9. 시행]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